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69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69
----------	------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1.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7.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 개연성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69
----------	------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출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6. 5. 22. ~ 6. 11.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구성 등) ①·② (생략) <u><신 설></u> <u>③</u> (생략)	제4조(위원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
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⑤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